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시설의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적용 배제〉

■ 김미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470호)

2026.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장지원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미애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4. 21.
3. 회 부 일 : 2026. 4. 2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원칙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보험자병원은 공공의료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해당 의료시설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의료시설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접수할 수 있도록 현행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률에 「국민건강보험법」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184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의료시설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 신설을 전제로,¹⁾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자병원이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 3조제1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 -----.
1. ~ 11. (생략)	1. ~ 11. (현행과 같음)
<u><신설></u>	<u>12. 「국민건강보험법」</u>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① 원칙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으나,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않는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²⁾ ②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

1) 이 개정안은 2026년 4월 21일 발의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4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함.

2)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등에 한하여 접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³⁾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의료시설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면서⁴⁾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 함)」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한 적용 예외를 두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의료시설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 병원(이하 ‘일산병원’이라 함)으로 하여금 「기부금품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 제한)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대표자의 임면과 업무 감독, 예산 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에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3)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① (생략)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제3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법인·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8477호)

제39조의3(기부금품의 모집·접수 등) ① 공단은 제14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공단이 운영하는 의료시설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하여 개인·법인·단체 등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으며, 개인·법인·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모집 또는 접수한 기부금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모집 또는 접수한 기부금품은 제1항에 따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④ 기부금품의 모집·접수·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기부금품 관리위원회를 둔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부금품의 모집·접수·관리 및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부금품 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서 정부로부터 매년 출연금을 지급 받으며 공단의 임원 중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공단의 예산 편성시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보건복지부가 공단의 인사
· 예산 등을 실질적으로 지휘·통제하고 있으므로,

현행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는 법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시설로 **일산병원**을 설치하여 운영하
고 있는데, 일산병원은 보험자병원으로서 공공의료기관과 정책집행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일산병원은 2022년부터 의료수입 대비 의료지출이 커 지속
적으로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건강보험재정으로 충당하고 있는 상황
으로, 각종 공공의료 사업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일산병원이 「기부금품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기
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산병원의 재원을 확충
하고 공공의료 사업을 활성화하려는데 기여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일산병원 최근 5년간 손익계산서 >

(단위: 백만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수익	계	344,618	336,292	327,443	358,069	375,063
	▫ 사업수익	320,210	309,30	295,372	286,048	332,012
	▫ 사업 외 수익	24,407	26,986	32,071	72,021	43,051
비용	계	329,824	346,750	363,814	359,112	375,602
	▫ 사업비용	316,524	331,751	345,583	341,866	364,993
	▫ 사업 외 비용	13,300	14,999	18,230	17,247	10,599
당기 순이익		14,794	△10,459	△36,370	△1,043	△539

※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 요약 손익계산서

특히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출자·출연기관 등이 우월적 지위에서 민간에 기부를 강요하는 경우 기부금이 일종의 준조세로 변질되어 민간의 부담을 가중할 가능성이 있음을 우려하여 기부금의 모집을 제한하고 있으나,⁵⁾

일산병원은 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병원으로서 준공공기관에 해당하고 각종 처분의 주체가 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별도의 권한을 위탁받지 않는 한 행정청의 지위를 갖지 못하므로 민간에 대해 가지는 우월적인 지위의 정도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약할 것으로 예상됨.

5) 헌법재판소 2019.11.28. 선고 2018헌마579 전원재판부 결정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무원이 기부금품 모집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자발적 외양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의무감에 기인한 기부금품 모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공무원의 기부금품 모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기부의 권유와 같은 행위 유형에 따라, 또는 업무 관련성이 없는 대상에 대하여만 일정 부분 공무원의 기부금품 모집을 허용하는 것 또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며,”

또한 현행법의 **연혁**을 살펴보면, 1951년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이 제정되어 기부금품의 모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었으나,

2006년 기부금품 모집 사전허가제가 폐지되고 도입제가 등록되면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되고, 2024년에는 기부금품 모집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부금품의 범위와 접수 방법을 확대하고 제명을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등 기부금품의 모집·사용에 대한 사전적 규제는 전반적으로 완화되어 왔음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기부문화 활성화라는 **입법 흐름**에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음.

이 외에도 기부금품의 모집이 가능한 **사립병원**과 달리 **일산병원**은 기부금품 모집을 통해 각종 재원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으로, 사립병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일산병원에 대하여도 기부금품의 모집을 허용하는 것이 적절한 측면이 있겠음.

다만, 개정안은 일산병원의 기부금품 모집·접수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4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한 것이나,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일산병원의 ‘접수’에 대하여만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해당 법률안을 **대안반영폐기**하고 관련 대안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고,

개정안 제3조는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하여 적용배제를 규정하고 있

음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 대한 직접적인 논의 필요성은 작아진 것으로 보임.⁶⁾

이외에도 현재 일산병원 외에도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 국립대학병원 등 다양한 공공의료기관이 존재하고 있는데 일산병원에 대하여만 「기부금품법」의 적용배제를 허용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다른 공공의료기관과의 형평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전체적인 공공의료의 현실을 고려하여 공공의료기관 전체에 대하여 현행법의 적용배제를 허용할 것인지 아울러 검토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측면이 있겠음.

참고로,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 기부금품 모집을 허용하는 내용의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⁷⁾이 2025년 2월 21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여 같은 해 3월 12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었으나,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하여 기부금품 모집의 예외를 허용하기 위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고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각종 국립대학병원과 국립암센터 등 다른 공공의료기관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개별 의료기관 차원이 아닌 공공의료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행정안전부의 의

6)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7)한지아의원 대표발의,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204373.

전을 고려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임.⁸⁾

< 국내 공공의료기관 체계 >

설립형태		소관부처	보건의료기관
중앙	국가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행정안전부	국립경찰병원
		법무부	국립법무병원
		국방부	군병원
		질병관리청	국립결핵병원
		국토교통부	국립교통재활병원
	특수법인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적십자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병·의원
		국가보훈부	보훈병원, 보훈요양병원
		교육부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국립대학한방병원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병원
지자체	시·도립 시·군·구립	보건복지부	권역재활병원
		행정안전부	시도/시군구립병원
	특수법인	보건복지부	지방의료원

※ 보건복지부 국가승인통계 ‘2023년 공공의료기관 현황’(2024)을 토대로 재작성

한편, 개정안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현행법은 국가 등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민간에 기부를 사실상 강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기부금품 모집을 금지하고 적용 배제는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고,

기부금품 모집 허용은 필수의료에 대한 정부의 종합지원 정책과 연계

8) 제22대국회 제423회 (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2025.03.12.) 회의록

하여 전체 공공의료기관 차원에서 신중한 검토와 함께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 및 관계기관 간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350